

#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성별 목표 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2021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연도별 성별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을 정함(안 제9조 및 별표).

※ 연도별 성별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

해당연도	'21년도	'22년도	'23년도	'24년도	'25년도	'26년도	'27년도	'28년도	'29년도	'30년도 이후
목표비율	16%	17%	18%	19%	20%	21%	22%	23%	24%	25%

나. 시립대학교 교원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, 이와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8. 27.~9. 16.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) ①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[별표]

**대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(제9조 관련)**

해당연도	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(%)
1. 2021년도	16
2. 2022년도	17
3. 2023년도	18
4. 2024년도	19
5. 2025년도	20
6. 2026년도	21
7. 2027년도	22
8. 2028년도	23
9. 2029년도	24
10. 2030년도 이후	25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&lt; 신 설 &gt;</p>        <p>제9조(생 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<u>제9조(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)</u></p> <p>①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.</p> <p>②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/p> <p><u>제10조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</p> <p>[별표]</p> <p><b>대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</b> (제9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해당연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. 2021년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</td></tr> <tr><td>2. 2022년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</td></tr> <tr><td>3. 2023년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</tr> <tr><td>4. 2024년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td></tr> <tr><td>5. 2025년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해당연도	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(%)	1. 2021년도	16	2. 2022년도	17	3. 2023년도	18	4. 2024년도	19	5. 2025년도	20
해당연도	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(%)												
1. 2021년도	16												
2. 2022년도	17												
3. 2023년도	18												
4. 2024년도	19												
5. 2025년도	20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
	6. 2026년도	21
	7. 2027년도	22
	8. 2028년도	23
	9. 2029년도	24
	10. 2030년도 이후	25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성별구성의 목표 비율 등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으로,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### 4. 작성자

조직담당관 박지애(2133-6748)